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

청소년수련원 · 유스호스텔 · 청소년야영장

2022. 01.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I.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
2. 평가개요	2
3. 평가단계와 절차	5
II.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6
1. 2022년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6
2. 2022년 청소년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33
3. 2022년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64

제 I 장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 평가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유도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 2
 - * 2014년 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시·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18. 6. 13일부터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평가 추진방향

- 현재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해당 평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차 개별 통지 후, 이의사항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
- 미흡이하 시설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수련시설의 전반적 수준 제고

2.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시설 : 235개소*

(청소년수련원 125개, 유스호스텔 80개, 청소년야영장 30개, '21. 10. 01기준)

* 평가대상 시설 수는 휴·폐지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1년12월 말 최종 확정

* 평가대상기간 중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평가 진행

* 평가기간 중 휴·폐지시설, 재난, 감염병 등의 사유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제외 예정

○ 평가대상 기간 : '20. 1. 1 ~ '21. 12. 31(2년)

* 20년도에 등록된 시설은 '등록시점부터 21.12.31까지' 운영실적 평가(1년 이상 경과한 시설)

○ 평가지표 : 2022년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하며, 일부 지표는 실태 확인(평가 미반영)으로 진행

○ 평가분야 : 운영 및 관리,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운영 발전의 총 5개 분야

○ 평가방법 :

- 수행기관이 주관하고 청소년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지표, 평가대상시설, 평가등급 심의확정 기구인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서면평가: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은 평가편람에 수록된 지침과 기준 등을 참고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제출(근거자료가 많은 것은 리스트만 작성 후 현장에서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표와 근거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현장평가: 현장방문 평가는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의 사실 여부 확인과 서면평가 자료에 대한 근거서류 및 현장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준비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보충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직원에 대한 면접 수행

- 현장방문 평가의 절차: ① 시설대표자 및 운영대표자 면담, ② 시설현황 브리핑, ③ 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

- 개별시설에 평가결과(안)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 평가등급 : 시설별 총 점수 기준으로 **3단계 등급(적정, 보완, 미흡)**으로 부여

평가등급	적정	보완	미흡
평가점수 (100점 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

- 관련규정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고 발생(시설이 붕괴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72조)의 벌칙(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조정 및 감점 기준 〉

구 분	기 준
청소년활동진흥법 20조의2제1항 사건발생	감점(10점) 단, 평가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청소년활동진흥법70조(벌칙)	유지확정시 등급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72조(과태료)	1건당 1점 감점

-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유예 가능

○ 종합 안전점검 등과 연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 시 보완이하*로 조정

* 1개 분야 부적합 : 보완 등급 /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미흡 등급

○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미이행 시 시정명령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독 실시
 - *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흡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년2회 이상)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미흡 시설에 대한 컨설팅, 개별시설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결과 보고(여가부 및 기초지자체)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컨설팅 후 개선 추진

○ 성적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성적 우수시설에 대해 “우수시설” 인증 표식 게시(2년간)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등
 -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수시설 중에서 선정(시설유형 고려)

3. 평가단계와 절차

○ 주요 단계 및 일정

평가준비 단계	사업설명회 개최 및 평가위원회 구성	202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평가지표 확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 설명회 개최 	
↓				
평가실시 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2022.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표 및 자료 제출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실 평가참여 독려 	
	↓			
	서면평가 실시	2022.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시설별 서면조사표 심사 	
	↓			
	현장평가 실시	2022.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리 및 확정	2022.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중간보고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반영 ■ 차년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 단계	종합평가 결과 공개	202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지자체 통보 ■ 평가결과 일반 공개 (여가부, 활동정보서비스) 	
	↓			
	평가보고서 작성	202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후속조치 ■ 세부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상기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제 II 장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지표

1.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8개 항목 - 16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 -1-1 2022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정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1. 운영 및 관리 (4.5점)	1.1 기관 운영 체계	4.5	1.1.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6	3.0	
			1.1.2 시설의 홍보 수준	5	0.3	1.5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 그램 (19.7점)	2.1 청소년 이용	7.7	2.1.1 청소년의 안전관리	5	1.5	7.7	●
	2.2 프로그램 운영	12.0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5	1.2	6.0	
			2.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	5	1.2	6.0	●
3. 인사 및 조직 (15.4점)	3.1 직원확보	7.7	3.1.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1.5	7.7	●
	3.2 직원교육 및 복지	7.7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1.5	7.7	●
4. 시설 및 안전 (45.4점)	4.1 시설환경	13.7	4.1.1 시설기준	5	1.5	7.7	●
			4.1.2 생활관의 쾌적성	5	1.2	6.0	
	4.2 안전관리	31.7	4.2.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5	1.2	6.0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정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4.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1.5	7.7	●
			4.2.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1.2	6.0	●
			4.2.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1.2	6.0	●
			4.2.5 안전교육 및 관리	5	1.2	6.0	●
5. 시설운영 발전 (15점)	5.1 시설운영 발전	15.0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1.5	7.5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1.5	7.5	
합 계						100	

표 -1-2 2022 청소년수련원 실태확인 지표

확인영역	확인항목	확인지표
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1.1 청소년 이용	1.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2.1 직원 확보
2. 인사 및 조직	2.1 직원 확보	2.1.1 직원 확보의 수준
		2.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 -1-3 1. 운영 및 관리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1.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 규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13개 이상 규정 보유
	우 수(4)	11~12개 규정 보유
	보 통(3)	9~10개 규정 보유
	미 흡(2)	7~8개 규정 보유
	매우미흡(1)	6개 이하 규정 보유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취업규칙, ②직제규정, ③인사관리규정, ④보수규정, ⑤복무규정, ⑥복리후생관리규정, ⑦회계 및 예산규정, ⑧사무(문서)관리규정, ⑨위임전결규정, ⑩여비규정, ⑪계약직관리규정, ⑫물품(비품)관리규정, ⑬시설관리규정, ⑭기타 등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전용시설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운영규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회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취업규칙(관할노동관서에 신고된 것 만 인정) 작성 보유 시 인사, 보수, 복무, 복리규정 보유 인정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으로 설립된 시설은 자체 운영규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자체 직영시설, 위탁시설(지자체 공단 위탁/지자체 산하 운영법인 위탁/청소년단체 위탁 등), 법인운영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규정의 관리 및 이행여부 * 재단 또는 공단 등의 상위 기관 정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인정함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원 운영규정집	

표 -1-4 1. 운영 및 관리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1.2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2가지 항목 해당													
	보 통(3)	1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해당 항목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7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15%;">O</th> <th style="width: 15%;">X</th> </tr> </thead> <tbody> <tr> <td>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td> <td></td> <td></td> </tr> <tr> <td>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td> <td></td> <td></td> </tr> <tr> <td>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X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		
	요소항목	O	X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 홍보계획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수련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 대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수련원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탈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대상 및 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표 -1-5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청소년의 안전 관리)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1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활동 실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매우미흡(0)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X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제반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p>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p>
평가자료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

표 -1-6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총점 10점			
	우 수(4)	총점 6점~9점			
	보 통(3)	총점 3점~5점			
	매우미흡(1)	총점 0점~2점			
평가요소	매뉴얼 구비여부		내용의 체계성	총점	
	매뉴얼이 모두 없음 0점		×	=	
	매뉴얼을 일부 구비 3점				형식적 1점
	매뉴얼을 모두 구비 5점				체계적 2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과 체계성을 평가함 •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은 2박3일 또는 1박2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3시간 또는 경우에 따라 4~6시간 이상의 단위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입소식, 퇴소식 포함)을 말하며 그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중 60%~99% 구비 시 '일부', 60% 미만 시 '없음'으로 적용 - 형식적 수준이란 1~2매 내외의 개요수준의 매뉴얼을 의미함 - 체계적 수준이란 함은 수련활동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도안 및 워크시트, 기자재 및 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함(예: 인증프로그램의 경우 이에 해당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안 포함내용 : 활동시기, 대상인원, 소요시간, 활동목표 및 활동개요, 준비물, 활동단계 (도입-전개-마무리)별 활동내용 및 활동장비, 유의사항, 안전 및 유의사항, 담당자 등 * 다른 직원이 프로그램을 대신 맡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평가자료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현황 및 매뉴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 확인서(신청문서 또는 상장)			

표 -1-7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수련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인증대상 수련활동 모두 인증
	보 통(3)	인증대상 수련활동 일부 인증
	매우미흡(1)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대상 수련활동(청소년 참가인원 150인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

구 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견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평가자료 인증수련활동 확인 자료

표 -1-8 3. 인사 및 조직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확보		
평가지표	3.1.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현장평가 방문 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보 통(3)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점검항목		O X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 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 원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 한다 (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 한다"를 인정 (인사, 예산의 경우에 위임 전결에서 예외로 함) [참고사항] 여성가족부 지침(2017년 1월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p>○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p>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p>

표 -1-9 3. 인사 및 조직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2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매우미흡(0)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요소	• 신규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 공적 문서 모두 인정) 현장 방문 시 확인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시설 ·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일용직, 강사 포함) -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미흡 '0'점 평정 <p>※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원에 상시로 출입하는 성인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갈음함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 	
평가자료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	

표 -1-10 4. 시설 및 안전 (시설기준)

평가항목	4.1 시설환경																		
평가지표	4.1.1 시설기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준수유지하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2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준수																	
	매우미흡(0)	법적 기준 미 준수																	
평가요소	• 법적기준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p>•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2(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확인함</p> <p>※ 필히 청소년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등록)와 현장과의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의 어느 한 시설(설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기준 미준수로서 '0'점으로 평정함</p> <p>※ 2005년 이전에 설립·운영되는 수련원은 당시의 법적 기준을 준용 (1996년 설립기준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기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활관</td> <td>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td> </tr> <tr> <td>식당</td> <td>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td> </tr> <tr> <td>실내집회장</td> <td>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야외집회장</td> <td>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가구, 설비 150인 이상 (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체육활동장</td> <td>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수련의 숲</td> <td>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강 의 실</td> <td>1실 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특성화</td> <td>문화감성, 과학 및 정보화,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내용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가구, 설비 150인 이상 (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강 의 실	1실 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
구 분	기준 내용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가구, 설비 150인 이상 (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강 의 실	1실 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	문화감성, 과학 및 정보화,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구 분	기준 내용
수련활동장	함양, 국제 감각 함양 중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 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의자탁자 등의 휴식설비와 간단한 식음료의 판매시설(자동판매기구를 포함한다) 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한다.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업소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평가자료	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된 일람표), 총별 도면, 시설현황자료

표 -1-11 4. 시설 및 안전 (생활관의 쾌적성)

평가항목	4.1 시설환경		
평가지표	4.1.2 생활관의 쾌적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에게 신선하고 편안한 잠자리 마련 등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2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이상 양호	
	우 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 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 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불량
	1)	객실 청결상태	
	2)	객실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3)	침구류 관리 상태	
	4)	화장실(샤워장 포함) 청결 상태	
	5)	화장실(샤워장 포함)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6)	객실·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7)	생활관 복도 내 청결 상태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생활관(전체 객실)의 청결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벽, 천정, 바닥 등의 상태(곰팡이 및 얼룩, 불편한 냄새 등) 그리고 침구류 등이 불량(얼룩, 불편한 냄새)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작동 불량, 파손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중 하나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생활관 복도 중 한 개의 층이 복도 상태(청결상태 및 복도 내 조명의 밝기 상태, 비상구 표시 여부, 객실번호표, 숙박정원표시여부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평가자료	각종 관리대장 및 체크리스트, 현장방문 평가	

표 -1-12 4. 시설 및 안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2월 31일 이전 			
평정기준	평가점수	가(임시)건축물이 있는 경우	가(임시)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우우수(5)	6개 항목 이상 해당	5개 항목 이상 해당	
	우수(4)	5개 항목 해당	4개 항목 해당	
	보통(3)	4개 항목 해당	3개 항목 해당	
	미흡(2)	3개 항목 이하 해당	2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X	
		1)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가(임시)건축물에 대한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		
		4) 위해시설물 발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체관리대장을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대상은 생활관, 체육시설, 실내외 집회장, 식당,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 안전관리 대상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자체관리대장 등 현장실사 기준		

표 -1-13 4. 시설 및 안전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개 교육 모두 이수	
	매우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이수	
평가요소	요소항목	2020년	2021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 현장평가 이전에 교육 이수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외범위

- 안전 분야 별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청소년수련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표 -1-14 4. 시설 및 안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점 : 점 			
평정기준	평점	기준	2020년	2021년
	매우우수(5)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	2.5	2.5
	보 통(3)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미보고	1.5	1.5
	매우미흡(0)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0	0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여부를 평가함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된 것만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상,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표 -1-15 4. 시설 및 안전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시점'까지 인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매우미흡(0)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매우미흡 '0'점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평가자료	보험가입증명서 및 약관 등	

표 -1-16 4. 시설 및 안전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5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하 1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8조의 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표 -1-17 5. 시설운영 발전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 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 통(3)	시설 발전 노력이 보통임
	부 족(2)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매우부족(1)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 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 태도와 수준 -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노력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 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다양화 부문에서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여부 평가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관련 실적 자료 확인) - 이전 평가 결과 대비 개선 정도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표 -1-18 5. 시설운영 발전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정책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정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침에 협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정 • 점수범위 : 2점 ~ 5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운영 중심으로 평가 • 청소년정책 협력 수준 • 기타 운영여건 및 환경과 평가의 준비 및 참여도를 고려한 평가위원 재량평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 우수사례 창출 노력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요구 조사 등)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직원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 감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명칭 : 표현상 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오해소지의 명칭(예; 인재개발수련원 등)과 수탁법인의 소유 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감점사유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우수사례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평정
평가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실적 등

2.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9개 항목 - 19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 -2-1 2022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정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1. 운영 및 관리 (5.4점)	1.1 기관 운영 체계	5.4	1.1.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5	0.54	2.7		
			1.1.2 시설의 홍보 수준	5	0.54	2.7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 그램 (13.9점)	2.1 청소년 이용	7	2.1.1 청소년의 안전관리	5	1.4	7.0	●	
	2.2 프로 그램의 제공	6.9	2.2.1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1.38	6.9		
3. 인사 및 조직 (12.3점)	3.1 직원 확보	2.7	3.1.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0.54	2.7	●	
	3.2 직원 운영	9.6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0.82	4.1	●	
			3.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1.1	5.5	●	
4. 시설 및 안전 (54.6점)	4.1 시설 관리	17.6	4.1.1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5	0.82	4.1	●	
			4.1.2. 시설 관리의 적정성	-숙박실의 적정성	5	0.54	2.7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5	0.54	2.7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5	0.54	2.7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5	0.54	2.7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5	0.54	2.7	●
	4.2 시설 운영	12.3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5	0.82	4.1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정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관리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5	0.82	4.1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5	0.82	4.1	
	4.3 안전 및 위생 관리	24.7	4.3.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5	1.1	5.5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0.82	4.1	●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82	4.1	●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5	1.1	5.5	
			4.3.5 안전교육 및 관리	5	1.1	5.5	●
5. 시설운영 발전 (13.8점)	5.1 시설 운영 발전	13.8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1.38	6.9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1.38	6.9	
합 계						100	

표 -2-2 2022 유스호스텔 실태확인 지표

확인영역	확인항목	확인지표
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1.1 청소년 이용	1.1.1 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2. 인사 및 조직	2.1 직원 확보	2.1.1 직원확보 수준
		2.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3. 시설 및 안전	3.1 시설 관리	3.1.1 연간 시설 가동률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 -2-3 1. 운영 및 관리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1.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규정 	
평정기준	5점	13개 이상 규정 보유
	4점	11~12개 이상 규정 보유
	3점	9~10개 이상 규정 보유
	2점	7~8개 이상 규정 보유
	1점	6개 이하 규정 보유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취업규칙, ②직제규정, ③인사관리규정, ④보수규정, ⑤복무규정, ⑥복리후생관리규정, ⑦회계 및 예산규정, ⑧사무(문서)관리규정, ⑨위임전결규정, ⑩여비규정, ⑪계약직관리규정, ⑫물품(비품)관리규정, ⑬시설관리규정 ⑭기타 등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전용시설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운영규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등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획일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취업규칙(관할노동관서에 신고된 것 만 인정) 작성 보유 시 인사, 보수, 복무, 복리규정 보유 인정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으로 설립된 시설은 자체 운영규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자체 직영시설, 위탁시설(지자체 공단 위탁/지자체 산하 운영법인 위탁/청소년단체 위탁 등), 법인운영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규정의 관리 및 이행여부 * 재단 또는 공단 등의 상위 기관 정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인정함(추가) 	
평가자료	관련 규정집 및 공문	

표 -2-4 1. 운영 및 관리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1.2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2가지 항목 해당													
	보 통(3)	1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해당 항목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15%;">O</th> <th style="width: 15%;">X</th> </tr> </thead> <tbody> <tr> <td>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td> <td></td> <td></td> </tr> <tr> <td>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td> <td></td> <td></td> </tr> <tr> <td>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X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		
요소항목	O	X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계획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유스호텔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 대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유스호텔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탈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관광 안내 책자나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의 소재 명시 여부 등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1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활동 실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매우미흡(0)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X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평가의 중점 사항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제반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p>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p>
평가자료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

표 -2-6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지역 여행정보 제공)

평가항목	2.2 프로그램의 제공			
평가지표	2.2.1 지역 여행정보 제공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책자 및 브로슈어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여 지역의 여행 및 관광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3개 해당		
	3점	1~2개 해당		
	1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X
		1) 외부 여행정보 자료 비치		
		2) 홈페이지에 지역 여행정보 제공		
	3) 자체 여행정보 제작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 •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여행정보 자료 : 외부 기관에서 제작한 여행정보 - 자체 여행정보 : 해당 유스호스텔에서 제작한 지역 여행 관련 책자 혹은 브로슈어 등 			
	평가자료	여행정보 자료 비치 및 정보제공 여부 현장 실사		

표 -2-7 3. 인사 및 조직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확보		
평가지표	3.1.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텔 시설운영 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근거에 부합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현장평가 방문 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보 통(3)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점검항목	O X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 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 원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 한다 (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유스호텔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유스호텔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인사, 예산의 경우에 위임 전결에서 예외로 함) [참고사항] 여성가족부 지침(2017년 1월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유스호스텔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표 -2-8 3. 인사 및 조직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0점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직원 <p>※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p> <p>※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유스호스텔에 상시로 출입하는 성인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함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 	
	평가자료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

표 -2-9 3. 인사 및 조직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개 교육 모두 이수	
	매우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이수	
평가요소	요소항목		2020년
	1) 성희롱예방교육		2021년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 현장평가 이전에 교육 이수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외범위

- 안전 분야 별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유스호스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p>실시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p> <p>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 <p>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p> <p>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표 -2-10 4. 시설 및 안전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여행청소년 등 이용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1), 2), 3) 충족	
	3점	1), 2) 충족	
	0점	1) 또는 2) 미충족시	
평가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X
		1)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당해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없다	
	3) 주변에 명승고적지, 역사 유적지, 문화 관광시설 등이 있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6)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자료	현장 실사 및 주변 환경 설명, 주변 청소년유해시설 현황 등		

표 -2-11 4. 시설 및 안전 (시설 관리의 적절성-숙박실의 적정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관리의 적정성 - 숙박실의 적정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은 법적 기준에 맞게 조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준수						
	0점	미준수						
평가요소	•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6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20%;">O</th> <th style="width: 20%;">X</th> </tr> </thead> <tbody> <tr> <td>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X	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			
요소항목	O	X						
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 평가방법</p> <p>-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이어야 한다.</p> <p>-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p> <p>-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p> <p>-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p> <p>-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실·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p> <p>-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평가자료	숙박실 현황 자료, 숙박실 현장실사						

표 -2-12 4. 시설 및 안전 (시설관리의 적절성-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관리의 적정성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2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 없음
평가요소	• 자가취사장 구비 및 법적기준 충족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자가취사장 이용자 현황, 자체 운영규정, 기타 관련 자료	

표 -2-13 4. 시설 및 안전 (시설관리의 적절성-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관리의 적정성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화·정보실을 별도 독립공간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공간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고 제공 자료가 있음
	3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으나 제공 자료가 없음
	0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 및 제공 자료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한 인터넷 활용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용 청소년들 간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대화·정보실 운영규정, 대화·정보실 구비 기자재 현황 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관리의 적절성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이용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2년 기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이상 양호	
	우 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 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 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불량
	1) 화장실 청결상태		
	2) 화장실 비품 및 가구관리		
	3) 샤워실 청결상태		
	4) 샤워장 비품 및 가구관리상태		
	5) 세면장 청결상태		
	6) 세면장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7) 건물 내·외부 정결상태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수질 검사표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 화장지, 거울, 손 건조장치, 종이 타월 등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물품의 구비 여부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중 하나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위생시설 설치기준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평가자료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 비품 운영사항, 현장실사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관리의 적정성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지도자실과 휴게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모두 준수		
	0점	1개라도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X
		1) 독립적인 지도자실 설치		
		2) 독립적인 휴게실 설치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함 청소년지도자들이 활동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이에 필요한 관련 기구와 비품을 갖추어야 함 			
평가자료	시설일람표, 시설 총별 평면도			

표 -2-16 4. 시설 및 안전 (시설 운영기준 준수)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등록증 게시, 정원표시, 방별 투숙기록 등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모두 준수																
	3점	3개 준수																
	1점	2개 이하 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O</th> <th>X</th> </tr> </thead> <tbody> <tr> <td>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td> <td></td> <td></td> </tr> <tr> <td>2) 숙박실 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td> <td></td> <td></td> </tr> <tr> <td>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td> <td></td> <td></td> </tr> <tr> <td>4) 개별이용을 허용하고 있다</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X	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			2) 숙박실 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			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4) 개별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요소항목	O	X																
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																		
2) 숙박실 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																		
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4) 개별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숙박실 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함 - 방별 숙박을 이용한 인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료	시설운영계획, 수련시설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개인이용실적 확인가능 자료																	

표 -2-17 4. 시설 및 안전 (생활지도 기준 준수)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이용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고 기준이 세부적임
	4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으나 세부적이지 않음
	0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도 운영기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함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금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시설 이용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평가자료	유스호스텔 이용수칙 및 안내문, 기타 증빙자료	

표 -2-18 **4. 시설 및 안전 (숙박정원 기준 준수 여부)**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등록증 상에 표기된 숙박정원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숙박기준 준수
	0점	숙박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기간을 선정하여 체결된 계약서 내용과 숙박정원 비교 숙박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된 경우는 0점 처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됨 	
평가자료	수련시설등록증, 시설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 이용현황자료에 대한 세부근거자료 확인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2월 31일 이전 			
평정기준	평가점수	가(임시)건축물이 있는 경우	가(임시)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우우수(5)	6개 항목 이상 해당	5개 항목 이상 해당	
	우수(4)	5개 항목 해당	4개 항목 해당	
	보통(3)	4개 항목 해당	3개 항목 해당	
	미흡(2)	3개 항목 이하 해당	2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X	
	1)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였다			
	3)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였다			
	4)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표 -2-20 4. 시설 및 안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평점	기준	2020년	2021년
	매우우수(5)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	2.5	2.5
	보 통(3)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미보고	1.5	1.5
	매우미흡(0)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0	0
평가요소	•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여부를 평가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표 -2-21 4. 시설 및 안전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시점'까지 인정 	
평정기준	5점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0점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0점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평가자료	보험가입증명서 및 약관 등	

표 -2-22 4. 시설 및 안전 (시설 청결도 및 위생상태)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관리운영 매뉴얼을 갖추고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침구세트를 교체하여 청결도를 유지토록하고, 조리실과 식당, 화장실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점수범위 0점 ~ 5점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불량
	1) 숙박실의 청결상태	2점	0점
	2) 화장실·세면장의 청결상태	1점	0점
	3)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상태	2점	0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구세트(침대시트 또는 이불 및 베개 커버) 및 숙소의 청소 상태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침구세트 청결 및 세탁 등에 대한 자체관리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조리실과 식당의 위생상태(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소독 장비, 환기시설, 냉장 및 냉동시설 구비 여부, 바닥·벽·천장 등의 청소 상태, 조리자의 위생복·위생모·장갑 착용 여부 및 청결도) - 화장실·세면장·샤워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 관리 및 교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함 		
평가자료	관리매뉴얼 및 점검 시스템		

표 -2-23 4. 시설 및 안전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5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하 1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표 -2-24 5. 시설운영 발전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 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 통(3)	시설 발전 노력이 보통임
	부 족(2)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매우부족(1)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노력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 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여부 평가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관련 실적 자료 확인) 이전 평가 결과 대비 개선 정도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표 -2-25 5. 시설운영 발전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정책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정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침에 협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정 점수범위 : 2점 ~ 5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 운영 중심으로 평가 청소년정책 협력 수준 기타 운영여건 및 환경과 평가의 준비 및 참여도를 고려한 평가위원 재량평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 우수사례 창출 노력 정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요구 조사 등)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직원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감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시설 명칭 : 표현상 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오해소지의 명칭(예; 인재개발수련원 등)과 수탁법인의 소유 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감점사유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의 우수사례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평정
평가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실적 등

3.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4개 영역 - 6개 항목 - 16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 -3-1 2022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정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5.7점)	1.1 프로그램 운영	5.7	1.1.1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1.14	5.7	
2. 조직 및 인력 (10.5점)	2.1 조직 운영	3.5	2.1.1 시설홍보수준	5	0.7	3.5	
	2.2 직원 확보	7.0	2.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0.7	3.5	●
			2.2.2 지도자의 윤리성	5	0.7	3.5	●
3. 시설 및 안전 (72.3점)	3.1 시설 및 설비 수준	17.1	3.1.1 활동시설 설치여부	5	1.14	5.7	●
			3.1.2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1.14	5.7	●
			3.1.3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상태	5	1.14	5.7	●
	3.2 안전 및 위생 관리	55.2	3.2.1 대피시설 설치상태	5	1.38	6.9	●
			3.2.2 비상설비 설치상태	5	1.38	6.9	●
			3.2.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5	1.38	6.9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5	1.38	6.9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5	1.38	6.9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5	1.38	6.9	●
			3.2.7 안전교육 실시여부	5	1.38	6.9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5	1.38	6.9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정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4. 시설발전 노력 (11.5점)	4.1 시설 발전 노력	11.5	4.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2.3	11.5	
합 계						100	

표 -3-2 2022 청소년야영장 실태확인 지표

확인영역	확인항목	확인지표
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1.1 청소년 이용	1.1.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2. 인사 및 조직	2.1 직원 확보	2.1.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3. 시설 및 안전	3.1 시설 관리	3.1.1 연간 시설 가동률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 -3-3 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평가항목	1.1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1.1.1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평가기준	야영장 인근 자연환경 및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있는가?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 우수(5)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준이 우수함
	우 수(4)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미 흡(3)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 평가기간 중 인증프로그램을 보유했을 경우 평정기준 매우우수로 평가 * 평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평정기준 매우우수로 평가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운영 매뉴얼 및 활동지도안이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예시: 등산, 오리엔티어링, 래프팅, 카누, 수영 등)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 확인서(선정문서 또는 상장) 	

표 -3-4 2. 조직 및 인력 (시설홍보수준)

평가항목	2.1 조직 운영														
평가지표	2.1.1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야영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2가지 항목 해당													
	보 통(3)	1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해당 항목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O</th> <th style="text-align: center;">X</th> </tr> </thead> <tbody> <tr> <td>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td> <td></td> <td></td> </tr> <tr> <td>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td> <td></td> <td></td> </tr> <tr> <td>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X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		
	요소항목	O	X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가지 방안 이상)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2가지 방법 이상)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 홍보계획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수련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 대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수련원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탈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대상 및 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표 -3-5 2. 조직 및 인력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2.2 직원 확보		
평가지표	2.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현장평가 방문 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보 통(3)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점검항목	O X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 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 원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 한다 (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총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야영장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인사, 예산의 경우에 위임 전결에서 예외로 함) <p>[참고사항] 여성가족부 지침(2017년 1월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p>*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p>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 (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사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표 -3-6 2. 조직 및 인력 (지도자의 윤리성)

평가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지표	2.2.2 지도자의 윤리성			
평가기준	직원채용 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자로서 필요한 법적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현장평가 방문시 			
평정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점 : 점 			
평정기준	평점	기준	2020년	2021년
	준수(5)	직원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2.5	2.5
	미준수(0)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0	0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년 1회 이상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합제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범위: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포함 • 연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체교육을 모두 포함)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p>※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p>			

표 -3-7 3. 시설 및 안전 (활동시설 설치)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1 활동시설 설치여부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실외활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 외에 추가 활용 가능한 활동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보통(4)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만 설치되어 있음
	미흡(3)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이 없음
평가요소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활동시설 설치현황(자연체험시설, 수영장, 챌린지 코스 등의 시설)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2)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p> <p>4)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실사, 시설관리대장 등 	

표-3-8 3. 시설 및 안전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2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취사장 구비 여부 및 시설 실태 현장실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취사장의 시설 설비가 법적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취사장 시설설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3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비품 구비
	3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비품 미비
	0점	화장실, 세면장 시설 중 하나라도 미설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및 세면장 관리 실태 현장 실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경우 남, 여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 (수질 검사표 등)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시설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표-3-10 3. 시설 및 안전 (대피시설 설치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1 대피시설 설치 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대피시설이 있으며 법적 기준에 적합함
	보통(3)	대피시설이 있으나 형식적임
	미흡(0)	대피시설이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시설 설치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대피시설'의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 -3-11 3. 시설 및 안전 (비상설비 설치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2 비상설비 설치 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통신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함
	보통(3)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작동상태가 불량함
	미흡(0)	비상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 위험표지물 등) 설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의 작동유무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비상설비'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3-12 3. 시설 및 안전 (긴급 상황 대비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대피시설 위치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이 안내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구비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며 인식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음
	보통(3)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나 인식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음
	미흡(0)	매뉴얼이나 안내문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구비 및 게시 여부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관리 및 보관 상태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매뉴얼, 현장실사를 통한 안내문 게시 여부 확인 	

표 -3-13 3. 시설 및 안전 (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와 비상연락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 상태 양호
	보통(3)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관리 상태 미흡
	미흡(0)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가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기구의 비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자료,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현장실사 	

표 -3-14 3. 시설 및 안전 (긴급후송대책 구축)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3개 항목 해당														
	3점	2개 항목 해당														
	0점	1개 이하 항목 해당														
평가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O</th> <th>X</th> </tr> </thead> <tbody> <tr> <td>1) 긴급후송대책 매뉴얼이 있다</td> <td></td> <td></td> </tr> <tr> <td>2)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다</td> <td></td> <td></td> </tr> <tr> <td>3) 후송차량이 정해져 있다</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X	1) 긴급후송대책 매뉴얼이 있다			2)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다			3) 후송차량이 정해져 있다				
	요소항목	O	X													
	1) 긴급후송대책 매뉴얼이 있다															
	2)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다															
3) 후송차량이 정해져 있다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및 긴급후송대책 매뉴얼 															

표 -3-15 3. 시설 및 안전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매우미흡(0)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수련시설 종합보험 등)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매우미흡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표 -3-16 3. 시설 및 안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7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점 : 점 			
평정기준	평점	기준	2020년	2021년
	우수(5)	안전교육 연2회 실시	2.5	2.5
	보통(3)	안전교육 연1회 실시	1.5	1.5
	미흡(0)	안전교육 미실시	0	0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교육 실적 자료(안전교육실시 기록대장),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표 -3-17 3. 시설 및 안전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 시설 및 설비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매우 청결함
	보통(3)	청결함
	미흡(0)	청결하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지, 자가 취사장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관리 대장, 현장실사 	

표 -3-18 4. 시설 운영 발전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4.1 시설 운영 발전	
평가지표	4.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 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양 호(3)	보통임
	보 통(2)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부 족(1)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 태도와 수준 -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노력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 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다양화 부문에서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여부 평가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관련 실적 자료 확인) - 이전 평가 결과 대비 개선 정도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

인 쇄 2022년 01월 일

발 행 2022년 01월 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